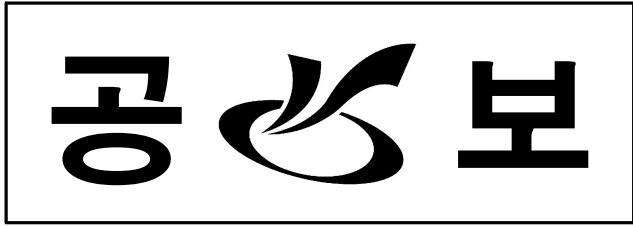


# 인천광역시서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선	기관의 장
람	

제 630호

2008년 3월 31일 월요일

## 차 례

### 고 시

-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8 - 12호 인천도시계획시설(공원:검암3어린이공원)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 ..... 2

### 공 고

-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 - 253호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지정 공고 ..... 4
-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 - 258호 공시송달공고 ..... 5
-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 - 271호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..... 7

회							
람							

발행 : 인천광역시서구

편집 : 기획홍보실

**고 시**

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8-12호

**인천도시계획시설(공원:검암3어린이공원)  
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**

인천도시계획시설【공원:검암3어린이공원】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,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(변경)인가를 고시합니다.

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(560-4766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.

2008년 3월 21일

**인천광역시서구청장**

- 1. 변경사유 :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
- 2. 사업 시행지(변경 없음) :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613-5번지
- 3. 사업의 종류 및 명칭(변경 없음)
  - 【종류】 도시계획시설(공원)사업
  - 【명칭】 검암3어린이공원 조성공사
- 4. 사업의 규모(변경 없음) : A = 4,224.6㎡
- 5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(변경 없음)
  - 【성명】 인천광역시 서구청장
  - 【주소】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번지
- 6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(변경)
  - 【당초】 2007. 12월 ~ 2008. 3. 31      【변경】 2007. 12월 ~ 2008. 9. 30
- 7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, 지번,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: 변경 없음

8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, 성명 : 변경 없음
9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: 변경 없음

**공 고**

인천광역시서구청고 제2008-253호

**건축허가에 따른 도로지정 공고**

건축허가(신축) 처리된 아래 대지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 및 동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로지정 사항을 공고 합니다.

2008년 3월 24일

**인천광역시서구청장**

**가. 도로지정 근거**

- 건축법 제35조(도로의 지정·폐지 또는 변경)
- 건축법시행규칙 제26조의3(도로대장 등)

**나. 도로지정 내역**

건축허가 위치	건축주	도로지정 현황		
		도로위치	도로지정 및 규모	비고
인천서구 왕길동 130-29,130-30, 129번지	이종서,김금숙, 정경이,김화수	왕길동 129번지	도로너비:1.235m 도로길이:129.6m 도로면적:160.0㎡	

다. 공고 방법 : 구보게재, 구 홈페이지 게시, 관할 동사무소 게시

라. 도면 열람 : 서구청 검단출장소 건축팀(☎ 032-560-3232)에 비치

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-258호

### 공 시 송 달 공 고

- 공고대상 : (주)중원레미콘 외 11
- 주소 또는 거소 : 붙임 내역 참조
- 공고내용 :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자 부동산압류예고
- 공고기간 : 2008. 03. 26 ~ 2008. 04. 10(15일간)

위 서류를 우편으로 귀하(사)에게 송달 하였으나 이사감, 폐문부재, 수취인불명 등의 이유로 재차 반송이 되어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2008년 04월 10일까지 인천광역시 서구청 교통민원과(☎032-560-4877)에서 고지서를 발부 받아 시중은행이나 농협 및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, 만일 공고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제 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8조(체납 처분) 규정에 의거 재산압류(대체압류포함) 조치할 것을 공고합니다.

2008년 3월 26일

###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

※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교통민원과(☎032-560-4877, FAX032-560-4869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공시송달공고 내역

[단위:원]

연 번	납부자 성명	주민등록 번호	체납금액	주 소	반송 사유
1	(주)중원 레미콘	1201**-- *****	900,000	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686번지 4호	이사감
2	이희상 T.574 -6376	3008**-- *****	1,039,500	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울생리 299-5 오성빌라 B-301	폐문부재
3	이충우	4805**-- *****	4,378,000	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175번지 65호 10통 5반 한울아트빌 105동 301호	폐문부재
4	모만봉	5208**-- *****	1,765,000	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125 번지 12호 9통 3반 수민빌라 A동 101호	폐문부재
5	박상오	5712**-- *****	1,041,000	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199번지 107호 2통 4반 황금빌라 가동 305호	폐문부재
6	오석중	5901**-- *****	900,000	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60번지 2호 12통 5반 신화빌라 2동 202호	폐문부재
7	이구만	6011**-- *****	2,410,000	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58 번지 17호 15통 2반 삼합빌라 8동 B01호	폐문부재
8	조미숙외 이세기	6310**-- *****	900,000	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306번지 16통 2반 코스모스아파트 4동 114호	폐문부재
9	김기철	6803**-- *****	1,530,000	인천광역시서구 연희동 703 번지 9호 20통 3반 대명파크빌라 11동 101호	폐문부재
10	심현국	6806**-- *****	1,225,000	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111번지 2호 1통 1반	폐문부재
11	정재창	7404**-- *****	561,000	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46통 4반 대원레스피아2차아파트 마전지구 43블럭 2,3컷트 504동 1602호	폐문부재
12	정진우	7509**-- *****	1,285,000	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940번지 10호 15통 5반 해성하이빌 101호	수취인 불명

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-271호

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법제 사무 처리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08년 3월 31일

인천광역시서구청장

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폐기물관리법 등의 개정으로 자치법규인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폐기물관리법 등의 일부조항이 삭제 및 추가되어 상위법 조항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08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(참조 : 청소행정과장)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등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-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연락처(전화번호)
- 기타 참고사항
  - 서구청 주소 :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(심곡동 244번지)
  - 전화번호 : (032) 560-4424
  - FAX : (032) 560-4399

4. 붙임

-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.
-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 끝.

## 자치법규 정비안 요약서

자치법규명	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
개정 이유	○ 폐기물관리법 등의 개정으로 자치법규인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
주요 골자	○ 폐기물관리법 등의 일부조항이 삭제 및 추가되어 상위법 조항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
개정안	“별지참조”
신·구조문 대비표	“별지참조”
관계법령 발취	“해당없음”
관련사업 계획	“해당없음”
예산 수반사항	“해당없음”
기타 참고사항	“해당없음”

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

##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시행규칙 제9조의2”를 “시행규칙 제16조”로 한다.

제3조 중 “법 제13조제1항”을 “법 제14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6조 중 “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6조제3호”를 “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7조”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법 제63조제3항제2호”를 “법 제68조”로 한다.

제10조제3항 중 “법 제63조제1항제1호”를 “법 제68조”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법 제13조제3항”을 “법 제14조제3항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2항 중 “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6조의2”를 “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”로 하고, “음식물쓰레기”를 “음식물류폐기물”로 한다.

별표 2의 부과 항목란 제2호 중 “법 제12조 관련”을 “법 제15조 관련”으로 하고, 제3호중 “법 제12조 관련”을 “법 제13조 및 제15조 관련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b>제8조(음식물류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)</b>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방법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<b>법 제63조 제3항 제2호</b>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.</p> <p>③~⑤ (생략)</p>	<p><b>제8조(음식물류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)</b>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</p> <p><b>법 제68조</b> ----- -----</p> <p>③~⑤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10조(음식물류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)</b></p> <p>①~② (생략)</p> <p>③ 구청장은 동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·대체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<b>법 제63조 제1항 제1호</b>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.</p>	<p><b>제10조(음식물류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)</b></p> <p>①~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----- <b>법 제68조</b> ----- -----</p>
<p><b>제11조(음식물류폐기물 수집·운반·처리 수수료의 부과·징수)</b></p> <p>① <b>법 제13조제3항</b>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·운반·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가격으로 하고,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,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~3.(생략)</p> <p>②~⑤ (생략)</p>	<p><b>제11조(음식물류폐기물 수집·운반·처리 수수료의 부과·징수)</b></p> <p>① <b>법 제14조제3항</b>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-----</p> <p>1.~3.(현행과 같음)</p> <p>②~⑤ (현행과 같음)</p>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---	---	---	---	---

**제12조(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·운반 및 재활용)**

- ① (생략)
- ②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**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6조의2**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자,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(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) 또는 폐기물재활용 신고자로 하여금 수집·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할 수 있다. 다만,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장구 이용 등을 통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.
- ③~④ (생략)

[별표 2]

**과태료 부과기준**

- 1. (생략)  
가.~나. (생략)
- 2. (생략)

적용법	부과항목	부과금액(만원)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폐기물관리법	1. (생략) 가.~나. (생략)			
	2.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등을 위반한 경우( <b>법 제12조 관련</b> )  가.~나. (생략)			
	3. 음식물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·개선·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( <b>법 제12조 관련</b> )	30	50	100

**제12조(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·운반 및 재활용)**

- ① (생략)
- ② -----  
-----**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**  
-----**음식물류 폐기물을**-----  
-----  
-----.
- ③~④ (현행과 같음)

[별표 2]

**과태료 부과기준**

- 1. (현행과 같음)  
가.~나. (현행과 같음)
- 2. (현행과 같음)

적용법	부과항목	부과금액(만원)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폐기물관리법	1. (현행과 같음) 가.~나. (현행과 같음)			
	2. ----- ----- ----- <b>(법제15조 관련)</b> 가.~나. (현행과 같음)			
	3. ----- ----- <b>(법 제13조 및 제15조 관련)</b>	--	--	--